

계룡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③통제관과 담당관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속한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계룡시
2. 경찰서
3. 군부대
4. 교육청
5. 소방서
6. 한국전력공사
7. 한국통신
8. 우체국
9. 기타 재해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계룡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